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4

발의연월일: 2020. 6. 24.

발 의 자:이종배·윤한홍·김상훈

이종성 · 김예지 · 윤영석

추경호 · 윤두현 · 양금희

김희국 • 전봉민 • 강대식

박완수 · 신원식 · 김정재

유경준 • 조수진 • 서일준

한기호 · 김승수 · 김영식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재해·가축질병·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고,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며,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, 배, 복숭아 등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수 없음.

또한, 재배금지 기간 경과 후 다시 과수를 심더라도 영년생 과수목

의 특성상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이 발생하려면 3년에서 4년의 유목기 간을 거쳐야 하는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.

따라서 과수나무를 심어 수확할 때까지 농가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며, 특히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 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,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과수농업인 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(안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"재해·가축질병·적조"를 "재해, 가축질병, 「식물방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검역병해충 중 과수화상병, 적조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분할하여 상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5조의2(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제5조의2(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의 지원) ① 정부는 재해·가축 의 지원) ① -----재해, 질병·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가축질병, 「식물방역법」 제2 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 조제5호에 따른 검역병해충 중 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 과수화상병, 적조----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 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 회생자금을 지원한다.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 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 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 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에 따른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 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 다.